

안  
세  
재  
경  
저  
널  
회  
원  
용  
·  
2  
0  
2  
1  
년  
6  
월  
16  
일  
(  
수  
)  
·  
주  
간  
제  
24  
호  
·  
통  
권  
제  
1  
5  
2  
3  
호  
·  
일  
감  
몰  
아  
주  
기  
·  
페  
어  
주  
기  
·  
중  
여  
세  
·  
신  
고  
납  
부  
안  
내  
·  
구  
독  
료  
·  
월  
3  
0  
0  
0  
0  
원

상장사 · 중소기업의 투명하게·적법세금·성공경영 정보 —



# 안세회계법인 재경저널



## 공인회계사 조세 저널

eAnSe.com  
온라인 30분내 Q&A 문서답변과 방송



2021/ 6/ 16 통권 1523호

CEO·CFO·COO · 회계책임자 · 조세전문가 · 재정실무자 · 총무담당자 · 모든 관리자용 **이름** 주간지

### CEO 에세이 - 이해익원장

신바람 경영은 없다

5억 원 넘는 해외금융계좌,  
6월 30일까지 신고하세요

### 경영관리임직원 재경컨설팅 제안

- 박윤중 회계사:  
2021년도에 적용되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 CFO·외계실무자·조세전문가 정보

- 대손세액공제요건 및 적용절차
-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6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하세요
- 5억 원 넘는 해외금융계좌, 6월 30일까지 신고하세요
- 공정거래법 시행령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 CMO·마케팅 Tax consulting 책면

- 해외법인의 국내 지점이 국내에서 해당 해외법인에게 제공한 지원용역은 용역의 자가공급에 해당되어 부가세 과세안됨 (p.14)

전직원 회람 공지 MEMO+경영관리자의 재무의사결정과 稅計經營戰略

### < 2020년의 코로나19로 인한 매출감소와 사업소득 결손금의 공제방법 >

개념, 구분	공제범위, 적용방법, 기간 등
사업소득 결손 (다른 소득은 결손개념 없음)	복식부기에 따른 일반 사업소득의 결손금 ① 당년도 종합소득 과세가능금액 계산시 타소득에서 다음 순서대로 공제(순서: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② 넘치면 향후 15년간 이익범위 내의 다른 종합소득에서 공제(먼저 사업소득, 근로소득 등의 순서로 공제함)
주거용 건물 임대업의 결손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타소득공제(① 당년도, ② 넘치면 15년)
부동산임대업 결손(일반부동산, 공장, 광업재단)	부동산임대업 결손금은 당기의 다른 종합소득에서는 공제하지 못하고 일단 이월결손금으로 반영한 후, 다음 15년간의 일반부동산 임대업의 소득에서만 공제할 수 있음  (당년도 사업소득 결손시의 대응 → 건물·기계 부분에 대해 감가상각비를 반영하지 않음)
추계조사시	이월결손금이 있어도 추계조사연도의 소득에서는 차감안됨
공제순서	당기결손금과 이월결손금이 있으면 당기결손금을 먼저 공제함
분리과세금융소득	분리과세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서는 공제받지 못함(금융소득원천세율은 환급되지 않음)

(안세회계법인 세무자문본부 제공)

안세회계법인  
02-829-7557

회계·경리·세무·재무·인사·노무·총무·법무·기획·재경(AnSe consulting)  
경영관리·총무 outsourcing + secretarial 서비스 + 중소기업창업·보육·지원센터

안건조세정보  
02-829-7575

# 주간 안세회계법인 재경저널

통권 1523 호 / 주간 24호

2021. 6. 16. (수)

· 발행인 : 이윤선  
 · 제작 : (주) 안건조세정보  
 · 대표전화 : (02) 829-7575  
 FAX : (02) 718-8565

## 목 차

### ♣ 회원가입 문의 안내

- 서울·수도권·경기·인천  
 전화:02) 829-7575  
 팩스:02) 718-8565
- 부산·경남  
 전화:051) 642-3988  
 팩스:051) 642-3989
- 대구·경북  
 전화:053) 654-9761  
 팩스:053) 627-1630
- 대전·충청  
 전화:010) 3409-2427  
 팩스:042) 526-1686
- 수원·안산  
 전화:010) 5255-6116

- ♣ 매월 구독·자문료 5만원  
 온라인 입금계좌  
 · 우리은행  
 594-198993-13-001

정회원(주간+월간 등)  
 월 구독료  
 5만원

### eAnSe.com의 차별화 특장

- ① 오늘 30분내 Q&A 전송
- ② 핵심내용 영문번역
- ③ 재경전반 동영상강의
- ④ 즉답(010-2672-2250)
- ⑤ 온라인 세무상담실
- ⑥ 모든 정보 통합검색
- ⑦ 마케팅 세무회계전략
- ⑧ CEO·CFO 경영에세이
- ⑨ 전담회계사 파견지문
- ⑩ 세무·회계·재경고문
- ⑪ 최고경영자의 세금전략

본지는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최고경영자 재경전략	2020년의 코로나19로 인한 매출감소와 사업소득 결손금의 공제방법	표지
긴 급 사 해 설	2021년도에 적용되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2
C E O 에 세 이	신바람 경영은 없다	4
세 무 · 회 계 상 담 자 문 (남들은 무슨 고민할까?)	- 대손충당금 손금산입액 한도 계산 관련 - 중국 현지법인으로부터 대금 회수 문의 - 위약금에 대한 부가세 및 세금계산서 - 세금계산서 관련	6 7
눈 에 맞 는 절 세 미 인	대손세액공제요건 및 적용절차	8
매 일 절 세 재 무 요 점	- 올해 보유세 어떻게 바뀌나 - 퇴직금제도 및 퇴직연금제도 비교	11 12
직 장 인 Survival	인간관계를 넓히는 대화의 법칙	13
최 신 판 례 예 규 (이런저런 유권해석)	- 내국법인이 보유중이던 주택을 철거한 후 나머지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택의 양도가 아닌 토지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기준법령법인-278, 2020.11.27) -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판단시 수입금액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의 법률에 따른 보조금을 포함하는 것임 (사전법령소득-473, 2020.06.12)	14 15
세 정 뉴 스 와 해 설	국세청,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30일까지 신고·납부	16
마케팅 Tax consulting	해외법인의 국내 지점이 국내에서 해당 해외법인에게 제공한 지원용역은 용역의 자가공급에 해당되어 부가세 과세안됨	14
세 무 정 보	-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6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하세요 - 5억 원 넘는 해외금융계좌, 6월 30일까지 신고하세요	17 30
경 영 정 보	- 공정거래법 시행령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43
세 무 환 율 정 보	부가세 영세율 과표확정 및 회계반영시 외화외상매출금 평가의 기준·재정환율	5

# 2021년도에 적용되는 연구 ·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방법



박윤중 공인회계사 (안세회계법인 대표이사)

- (전)한국외대 경영대학 겸임교수, (전)국민대 경영대 겸임교수
- 공인회계사 · 경영학박사(마케팅조세전략, 회계경영학원론)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와 서울대 경영대학원 졸업
- 다수우량기업 회계 · 세무고문(SK증권, 지오다노, 동서그룹 등)

가업승계·증여·상속자문  
기업경영권 양도 컨설팅  
(829-7575)

- 1. 대상** : 신성장, 원천기술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비 (2021년 12월 말까지 발생분)
- 2. 공제율** : 중소기업은 30%, 기타는 20%, 코스닥 상장 중견기업은 25%
- 3. 연구소** : 연구개발업무만 수행하는 국내소재 전담부서 + 기업부설연구소
- 4. 연구원** : 연구전담직원만 해당 (연구소 관리 직원이나 겸직연구원은 해당안됨)
- 5. 연구원 인건비** : 연구전담부서의 연구개발 전담요원의 급여, 상여, 수당 등 인건비  
(퇴직소득 제외, 퇴직연금부담금 제외, 퇴직급여충당금의 비용반영액 제외)
- 6. 연구직접비용** : 연구용 견본품, 부품, 원재료, 시약류, 시범제작 외주가공비, 관련 S/W  
서체, 음원, 이미지 대여구입비 등 (교통비, 복리비, 소모품비는 제외)
- 7. 연구시설비용** : 연구전담부서 직접사용 연구시험용 시설의 임차비용 (시설임차운영리스비  
용, 렌탈비용 포함), 외주기관 시설의 이용비용 등도 해당 (단, 금융리스 이자는 해당안됨.  
차입금이자도 해당 안됨)
- 8. 금융비용제외** : 연구부서를 위한 금융차입금의 지급이자 제외, 금융리스 이자제외, 렌탈료  
등의 이자해당액도 제외
- 9. 출연, 지원 제외** : 연구개발출연금 등으로 지원받은 금액은 제외, 공공기관 · 지방공기업이

지원한 연구개발비 해당액도 제외함.

◆ 관련 예규(법인 46012-2604, 1997.10.10)

연구시험용 시설의 임차에 소요된 비용에는 운용리스료를 포함함

[질의]

1. 당사에서 시험·연구용 기자재를 직접 구입한 경우 구입비용 또는 감가상각비용에 대한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대상비용이 되는지의 여부
2.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9조의 제2항 관련 별표4의 기술·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 받는 비용의 1. 기술개발 가목 ③에서 임차의 경우 리스로 구입시 (1) 운용리스의 경우는 리스료가 임차료의 성격이므로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가 되고 (2) 금융리스의 경우에는 자산에 대한 할부금의 성격이므로 세액공제대상이 안되는 것인지 여부

[요지]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중 연구시험용 시설은 임차에 소요된 비용에 한하므로 직접 구입한 경우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으나 운용리스계약을 체결하여 사용하고 지급하는 운용리스료는 임차비용에 해당됨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의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중 연구시험용 시설은 동법 시행령 별표4의 1. 기술개발 가목 ③에서 전담부서에서 직접사용하기 위한 연구시험용시설의 임차에 소요된 비용에 한하므로

동 시설을 직접구입한 경우에는 동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으나, 운용리스계약을 체결하여 사용하고 지급하는 운용리스료는 임차비용에 해당된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 신바람 경영은 없다



이해익 원장 : 리즈경영컨설팅 대표컨설턴트·CEO칼럼니스트

- 한국CEO연구 포럼 연구위원장, 머니투데이에 CEO 에세이 연재
- (전)진로그룹 이사·캠브리지총괄전무, 한국능률협회 교수요원
-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 기업평가위원장으로 활동
- (겸임)한국팔기회고문, 한국표준협회 경영고문, 최고경영자 과정 출강
- 서울상대졸업 011-241-8558, haeikrhee@hotmail.com

선동경영은 있을지언정 신바람 경영은 거의 거짓이다. 세상이 혼탁할수록 사람들을 온갖 교활한 말로 그럴싸하게 속이는 경우가 많다. 선현들의 가르침이다. 혹세무민(惑世誣民). 세상사람들을 미혹하게 하여 속이는 것을 일컫는다. 세상살이가 급변하며 미래를 가늠하기 힘들 때 불안한 민심을 파고드는 무당과 잡신들의 놀음이다.

교언영색(巧言令色). 남의 환심을 사려고 아첨하는 교묘한 말과 보기 좋게 꾸미는 얼굴빛을 말한다. 본처(本妻)는 모든 구성원들의 안위와 번영을 위해 근본을 지키는 변함없는 성실을 유지한다. 그에 비하여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독버섯처럼 일시적으로라도 화려한 교태를 꾸며내는 첩의 생리가 교언영색이다. 기본을 어긴 편법이 끝내 보약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러나 사람들이 어리석게도 혹세무민이나 교언영색을 세월이 흐른 후에 간파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신바람 경영이니 하며 한때 호들갑을 떨던 해괴망측한 경영이론도 마찬가지다. 그 재벌계열사의 가전제품개발을 위해 조직의 낙오자(?)들과 함께 연구 개발하여 큰 성과를 올렸다는 신바람경영. 그것은 술 취한 듯 일시적이고 충동적인 학자의 연구소 작업은 될지언정 냉철하고 지속적인 생산현장과 기업의 현실이 될 수 없는 이론일 뿐이었다. 한국이 선진국을 따라잡고 또 한발 앞서는 경영이론으로까지 과대 포장되면서 그 주장을 담은 책은 장안의 짓가를 높이기도 했다. 돌이켜 보면 허무맹랑하다. 인간의 소산인 경영에 사실 신(神)이 놀랄 방책이 있을 리 만무하다. 그런데도 하루가 멀다하고 새로운 경영기법과 전략이나 비결이 경영 성공자의 입을 통해 또는 학자들의 포장술을 통해 수없이 쏟아져 나온다.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경영전문 용어들이 전후좌우에서 난무하고 있다. 요란하게 떠들어댈수록 그 저의는 딴 곳에 있는 경우가 많다. 결국 한국에서는 거짓이나 현학적인 지식놀음으로 결판나는 게 허다하다. 비극이다. 경영환경과 토양이 다른 때문이기도 하다. 기본이 미흡하고 신뢰가 무너진 상태에서 사상누각을 세우는 경우가 많다. 또 '빨리 빨리'하는 발작적 줄

속문화가 극복돼야 한다. 꾸준한 땀과 성실이 존중되어야 열매가 열리는 빠른 이치, 기본을 존중하는 공감대가 넓게 존재해야 한다. 지속적으로 진정 신바람 나려면 복잡 미묘한 비책이 따로 없다. 복잡 미묘해서 모든 사람들이 공감하지 못하는 것은 학자의 이론과 철학은 될지언정 기업이나 국가의 경영전략과 정책이 될 수는 없다. 따라서 보편성을 띤 양식, 상식이 통하는 게 중요하다. 상벌이 공정해야 하고 보상이 엄정해야 한다. 정직해서 신뢰가 축성되어 있어야 한다. 기술 개발도 어느 날 갑자기 잠꼬대처럼 나오는 게 아니다.

꾸준한 근면과 연구에서 나오는 것이다.

약 200년전 전쟁에 져서 많은 국토를 빼앗기고 황무지만 남은 덴마크를 일으켜 세우는데 앞장섰던 정신적 지도자 그룬트비히. 그는 당시 덴마크 청년들에게 기발한 묘책을 내놓은 것이 아니다. "밖에서 잃은 것을 안에서 찾자!"며 흑세무민과 한탕주의를 열정적으로 경계했다.

"땀과 봉사를 요구한다. 그러면 위대한 덴마크가 있을 것이다!"

누구나 아는 상식 수준의 기본이다. 여론과 인기에 영합하는 표플리즘을 극복했다. 진실한 그룬트비히에게 영향을 받은 은퇴한 대령 달가스는 고통을 감내하며 황무지에 성실히 나무를 심어 나갔다. 그렇게 현재 덴마크는 나무수출국이 되었다.

### 부가세 영세율 과표확정 및 회계반영시 외화외상매출금 평가의 기준 재정환율

통 화 명			6월 4일(금)	6월 7일(월)	6월 8일(화)	6월 9일(수)	6월 10일(목)
미	달	러 (USD)	1111.80	1117.50	1111.20	1113.70	1115.80
일	본	엔 (JPY)	1008.02	1019.71	1016.88	1017.12	1017.74
캐	나	다 달 러 (CAD)	918.35	925.35	919.45	919.16	920.97
홍	콩	달 러 (HKD)	143.31	144.06	143.21	143.52	143.80
위	안	화 (CNH)	174.15	174.52	173.76	174.40	174.38
유	로	화 (EUR)	1348.61	1359.33	1354.61	1355.60	1358.77
호	주	달 러 (AUD)	851.69	864.83	861.96	861.67	862.29
싱	가	폴 달 러 (SGD)	837.23	843.97	839.91	841.04	842.21
말	레	이 시 아 링 기 트 (MYR)	269.69	270.71	269.19	270.25	270.99

대손충당금 손금산입액 한도 계산 관련

**Q** 대손충당금 손금산입액 한도 계산 시 설정대상 채권의 채권 잔액은 어떻게 산출하는지요?  
 예를 들어, 장부상 외상매출금 100억원 (대손 20억원 설정), 보증금 10억원 (대손 3억원 설정), 미수금 1억원 (대손 설정 없음) 이라고 가정할 때  
 설정대상 채권의 잔액은 111억원이 되는 것인지? 110억원이 되는 것인지요? (대손설정되지 않은 미수금은 채권의 잔액에서 제외하는 것인지요?)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을 판단하지 않으므로 111억원이 맞다고 생각됩니다만 검토 부탁드립니다.

**A**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데, 시가초과액에 상당하는 채권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채권이 인정되므로 귀사의 의견대로 111억으로 반영하면 됩니다.

중국 현지법인으로부터 대금 회수 문의

**Q** 중국 현지의 고객사로부터 금형비를 받았는데 문제는 이 금형비를 당사의 중국 현지법인에 지급을 해 준 것입니다.  
 이유인 즉, 당사가 부품을 중국 현지법인에 공급하면 현지법인에서는 이를 가공/조립하여 현지 고객사에 납품하는 형태인데, 고객사 입장에서 납품처가 중국 현지법인이기 때문에 금형비를 당사가 아닌 현지법인으로 입금을 해 준 것입니다.  
 중국 현지 입찰 및 수주 대응 등 모든 업무는 당사에서 이루어지고 중국 현지법인은 생산만 위탁받아 납품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관련 금형비용은 당사로 회수하여야 한다는 입장인데 이 경우 당사와 중국현지법인과는 실물의 거래가 아니고 용역거래의 형태도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데, 어떤 증빙을 갖춰야만 당사가 대금 회수를 할 수 있을런지 문의 드립니다.

**A** 대금의 회수와 관련된 증빙은 세법 규정사항이 아니므로 세법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실제 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갖추면 되므로, 귀사와 중국 고객사와의 계약서사본으로 귀사의 매출 거래임이 입증되므로 계약서 사본을 갖추면 된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귀사와 중국현지법인과의 위수탁 계약서 사본도 갖추시면 됩니다.

## 위약금에 대한 부가세 및 세금계산서

**Q** 행사 위약금에 대해서는 비과세로 알고 있습니다.  
행사 주최 업체에서 위약금에 대한 계산서 발행을 원할시 면세 계산서로 발행이 가능한지요?  
아니면 발행할 의무가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  
또한 위약금에 대한 지불을 카드로 결제시에도 비과세인지 문의 드립니다.

**A** 세금계산서는 과세대상 재화나 용역을 공급시 발급하는 것으로, 위약금이나 배상금 등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로 지급되는 금액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되는 거래가 아닙니다.  
따라서 비과세가 아니고 아예 세금계산서 발급대상 거래가 아니므로 발급하지 않는 것입니다.

## 세금계산서 관련

**Q** 온라인몰에서 광고를 진행하여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았습니다.  
(온라인 몰에서 상품 판매중입니다.)  
그런데 광고비대금은 무상으로 지원해준다고 하여, 대금을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해당건 매입부가세 공제 받아도 되는 것인지요?  
매입 불공제로 처리해야하나요?  
광고선전비/ 부가세/ 잡이익으로 처리해도 될까요?

**A** 무상으로 공급되는 용역은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도 결과적으로 용역의 무상공급이 되었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말아야 합니다.  
귀사의 의견대로 불공제 처리하시고 영업외수입(잡수익)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 대손세액공제요건 및 적용절차

상담실 백종훈 차장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세를 징수하여 과세관청에 신고·납부하여야 하는데, 공급받는 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매출채권 등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공급자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부담하여야 한다.

이처럼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의 파산이나 사망, 실종 등의 사유로 인해 부가가치세액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회수하지 못한 부가가치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제도를 대손세액공제라고 한다.

대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요건 및 적용방법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기로 한다.

### 대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주요 사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은 대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사유를 소득세법시행령 제55②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의2①에 의한 대손금 인정사유와 동일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대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주요 요건은 다음과 같다.

#### (1) 상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상법 제64조는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상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운송주선인 및 운송인의 위탁자 또는 수하인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1년(상법 제122조·제147조), 창고업자의 임치인 또는 창고증권소지인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1년, 보험금액의 청구권과 보험료 또는 적립금의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2년, 보험료의 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1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상법에 규정하고 있는 5년, 2년 또는 1년 등의 시효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적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상법 제64조는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상행위에 따른 채권이라도 민법에 따른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경우가 많다.

(2) 어음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어음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해 인수인에 대한 환어음상의 청구권은 만기일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하는데 소멸시효가 지난 어음도 대손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어음법상 어음의 소멸시효규정은 상법 규정보다 단기의 소멸시효규정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는데, 어음법상 소멸시효규정은 어음 자체에 대한 시효규정으로 본래의 매출채권에 대한 시효규정으로 볼 수 없으며, 부도어음에 대하여는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 조기에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도록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어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유의 적용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3) 수표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수표법 제51조는 소지인의 배서인·발행인·기타의 채무자에 대한 소구권은 제시기간 경과후 6월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도 소멸시효 완성시점에 대손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하다.

(4) 민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민법에 의해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도 대손세액공제 적용하는바, 민법상 일반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특별히 3년 또는 1년의 단기소멸시효규정(민법 제163조 및 제164조)을 두고 있어 이 규정은 상법보다 우선 적용한다.

(5)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 결정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함이 없이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때에는 회사는 법원에 대하여 정리절차개시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정리계획은 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로부터 효력이 생기며(회사정리법 제236조), 정리계획인가결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에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6)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사망, 실종 등으로 회수불능 채권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의 결정으로서 파산이 선고되어 회수하지 못하게 된 채권 및 채무자 재산이 국가 등에게 강제 집행 처분되어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도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7)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된 수표 및 어음

어음·수표에 대하여는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에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부도발생일이란 어음의 제시기간 내에 은행에 제시하여 부도 확인을 받은 날을 말한다. 특히 주의할 점은 어음의 제시기간 내에 은행에 제시되어야 그 어

음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제시기간경과 후에 제시한 때에는 은행이 그 지급을 거절하므로, 어음의 제시기간경과 후에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사유로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다.

하지만 제시기간을 넘겨서 제시된 어음에 대하여는 그 어음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나 어음발행인(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에 대한 채권은 존속하므로 당해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등 다른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유로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8) 그 외의 대손세액공제 적용 사유

이밖에 회수기일 6월 이상 경과한 20만원 이하의 소액채권,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대손승인받거나 대손처리 요구받은 채권, 법인의 창업자에 대한 채권으로 중소기업청장 등이 인정한 것 등도 대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대손세액공제절차 및 대손사실입증 서류**

대손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한 대손사유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에 대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이외의 과세기간에 신고한 대손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대손세액을 공제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확정신고서와 함께 대손세액공제신고서에 대손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대손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는 매출세금계산서사본과 채권배분계산명세서·법원이 교부한 부동산 임의경매에 대한 배당표 등(파산·강제집행시), 가정법원 판결문(사망·실종 신고시), 회사정리계획인가안(회사정리계획인가결정시), 부도어음이나 수표사본(부도어음·수표시) 등이 있다.

◆ 대손사실 입증서류 ◆

유형별	첨부서류
파 산	매출(입)세금계산서, 채권배분계획서
강제집행	매출(입)세금계산서, 채권배분계획서
사망·실종	매출(입)세금계산서, 가정법원판결문, 채권배분계획서
회사정리계획인가 또는 화의인가	매출(입)세금계산서, 법원이 인가한 회사정리계획안 또는 화의인가안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경과 어음	매출(입)세금계산서, 부도어음(원본)
상법상의 소멸시효 및 회수실익이 없는 소액채권	매출(입)세금계산서, 기타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거래대금 청구내역 등)
기 타	매출(입)세금계산서, 채권의 회수불능 입증서류

- 안건조세총서, 기업경영회계·세무, 법인세법상세해설서  
- 경제신문자료와 공공기관발표자료 등

### 월

#### 올해 보유세 어떻게 바뀌나

세목	부과 기준일	세율	변화
재산세	6월 1일	0.05~0.4%	1가구 1주택자 재산세 감면 기준액 공시가격 9 억원으로 상향
종합부동산세	6월 1일	0.6~6.0%	상위 2%만 중부세 부과 등 논의 중

### 화

#### 연금저축보험의 세액공제 혜택

종합소득금액	세액공제율	납입한도	환급세액
4,000만원 이하	16.5%	400만원 (50세 ↑ 600만원)	66만원 (99만원)
4,000만원 초과	13.2%		52만원 (79만원)
1억원 초과			300만원



## 퇴직금제도 및 퇴직연금제도 비교

구분	퇴직금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개인형(IRP)
퇴직급여 형태	일시금	연금 또는 일시금		
급여수준	근속년수 1년당 30 일분의 평균 임금	일시금 기준으로 퇴 직금과 동일	근로자의 운용실적 에 따라 변동	기업자의 운용실적 에 따라 변동
규약신고	취업규칙	퇴직연금규약		불필요
사외적립 부담 수준	사용자 재량	퇴직금 추계액의 90% 이상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	가입자 재량
부담금 납부	사용자			가입자
수수료부담	-	운용·자산관리 : 사용자 근로자 추가납입 : 근로자		가입자
적립금의 운용	-	사용자	근로자	가입자
연금 수령요건	-	55세 이상으로서 가입기간 10년 이상		55세 이상
중도인출 (중간정산)	가능(특정한 사유*)	불가	가능(특정한 사유*)	



## 연금저축 vs IRP 세액공제 비교

총급여액	일반	50세 이상	공제율
총급여 5500만원 이하 (소득금액 4000만원)	700만원 (연금저축 400만원 포함)	900만원 (연금저축 600만원 포함)	16.5%
1.2억(1억원) 이하			
1.2억(1억원) 초과	700만원 (연금저축한도 300만원 포함)		13.2%



## 인간관계를 넓히는 대화의 법칙

첫째. 자기를 향상하고 이득을 주는 것은 책과 훌륭한 친구이다.  
먼저 친구들에게 도움을 주는 상대가 되도록 노력하라.

둘째. 자신보다 뛰어난 존재면 질문하고 경청하라.  
자신보다 못하면 조언하고 힘이 되어주어라.

셋째. 좌중이 침묵에 빠지면 화제를 제공하여 입을 열게 하라.  
화제는 중요한 내용이 아니고 간단하고 가벼운 내용도 좋다.

넷째. 대화 중에 중요한 내용이나 유용한 정보는 메모해 두어라.  
메모하는 습관은 아주 중요하고 좋은 것이다.

다섯째. 활발한 대화가 오가는 자리에선 침묵은 악덕이 된다.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지 않으면 거북한 존재가 된다.

여섯째. 성급하게 떠들면서 말하지 마라.  
이야기가 계속돼도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할 때까지 기다려라.

일곱째. 누구나 결점이나 잘못에 대하여 다른 관점을 가질 수 있다.  
반론이나 비판은 신중하게 하여야 한다.

여덟째. 친구가 누군가의 험담이나 몰상식한 발언을 하면 충고하라.  
더욱더 자신의 늪에 빠지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아홉째. 어떤 분야의 전문가처럼 행동하여 이목을 끌지 마라.  
자신이 그 분야에 대해 잘 안다고 해도 다른 관점에서 발언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 것이다.

열째. 어리석게 여겨지는 이야기라도 잠시 참고 들어주어라. 어느 이야기든지 거기에서도 배울 점이 있다. 이야기가 오래 지속한다면 자연스럽게 화제를 돌려주어야 한다.

마지막. 여유로운 기분으로 대화에 임하라.  
편안한 가운데 오고 가는 대화는 따뜻하고 창의적이다.  
흥분하고 걱정적인 자리에선 좋은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 최신 판례 예규

## Marketing Tax consulting

해외법인의 국내 지점이 국내에서 해당 해외법인에게 제공한 지원용역은 용역의 자가공급에 해당되어 부가세 과세안됨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국외소재 본점을 위해 수행하는 지원용역은 용역의 자가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사전법령부가-974, 2020.11.30

### 질 의

- 신청법인은 비파괴검사장비의 개발, 제조 및 도매업을 영위하는 미국 소재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으로 외국본점의 비파괴검사장비(이하 "제품")의 판매와 관련하여 시장조사업무, 사무처리 지원서비스 및 수리용역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되었음
- 신청법인은 외국본점과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제품 판매에 수반되는 사무처리 지원서비스 등을 제공하기로 하였고 구체적인 업무는 다음과 같음
- 판매 전 시장조사 및 마케팅 : 잠재적인 시장개발을 위한 회의참석, 잠재고객과의 상담, 경쟁사 제품 및 판매활동 모니터링 등
- 사무처리 지원서비스 : 외국본점과 국내 고객 간 커뮤니케이션 지원, Shipping 관련 문서 및 판매금액 수령 현황에 대한 관리
- 고객 사후관리 서비스 : 최종사용자에게 장비에 대한 교육제공, 한국 및 아시아 고객에게 교정 및 수리 서비스 제공

### 질의

-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외국 소재 본점의 제품판매와 관련하여 사무처리 지원업무, 제품수리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용역의 자가공급에 해당하는지

### 회 신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외국본점의 제품 판매와 관련하여 판매 전 시장조사 및 마케팅, 사무처리 지원, 고객 사후관리 서비스 등 업무지원용역을 제공하고 외국본점으로부터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국내지점이 외국법인에 제공하는 업무지원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용역의 자가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내국법인이 보유중이던 주택을 철거한 후 나대지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택의 양도가 아닌 토지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기준법령법인-278, 2020.11.27

### 질 의

- A법인은 과자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3.11.21. 경기도 \*\*시 \*\*동 소재 주택과 부속 토지를 경매로 취득하였는바(낙찰가액 810백만원) - 주택에는 취득 전부터 세입자가 장기간 거주하고 있었으며, A법인은 당해 주택과 부속토지를 취득한 이후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없음
- A법인은 이후 2016년 1월 초에 해당 주택을 철거한 후 2016.1.27. 매수자와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여 잔금청산일인 2016.1.29. 해당 토지를 나대지 상태로 양도하였음(양도가액 1.881백만원)

### 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보유중인 주택을 철거한 후 나대지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 주택의 양도로 보아 「법인세법」 제55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토지 등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 회 신

내국법인이 보유중이던 주택을 철거한 후 토지매

매계약을 체결하여 나대지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당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55조의2제1항제2호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판단시 수입금액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의 법률에 따른 보조금을 포함하는 것임**

사전법령소득-473, 2020.06.12

**질 의**

- 신청인은 여객자동차터미널 운영업을 주업으로 하고 부동산임대업을 겸영하는 개인사업자임
  - 지자체로부터 환경정비 및 현대화 사업의 일환으로 지방재정법에 따른 지방보조금을 지급받아 건물을 개축함
  - ※ ◇◇군 대중교통활성화지원조례 제3조 제6호

**질의**

-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판단시 수입금액에 지방보조금을 포함하는지

**회 신**

귀 사전답변의 경우, 개인 사업자의 사업소득 수입금액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33조제1항 각 호의 업종별 수입금액 이상인 경우 「소득세법」제70조의2에 따라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때 사업소득 수입금액에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급받는 지방보조금을 포함하는 것임니다.

**내국법인이 사내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자녀 및 본인 학자금(임직원이 지급규정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 매분기 또는 3월·9월에 지급)을 임직원이 소급 신청함에 따라 과거연도분의 학자금을 일시에 지급하는 경우, 해당 지급액에 대한 손금의 귀속 시기는 신청에 따라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니다.**

서면법인-4024, 2020.05.26

**질 의**

- (주)○○(이하'질의법인'이라 함)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으로 사무직 및 생산직 근로자에게 단체협약을 통해 본인 및 자녀의 학자금(유치원, 고등학생, 대학·대학원생)을 일정절차\*에 따라 신청한 경우
- 주관부서에서 신청서류를 검토·품의한 후 승인권자의 결재를 득하여 지급함

**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사내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학자금을 임직원이 소급신청함에 따라 일시에 지급하는 경우 손금산입 여부

**회 신**

내국법인이 사내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자녀 및 본인 학자금(임직원이 지급규정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 매분기 또는 3월·9월에 지급)을 임직원이 소급 신청함에 따라 과거연도분의 학자금을 일시에 지급하는 경우, 해당 지급액에 대한 손금의 귀속 시기는 신청에 따라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니다.



# 세무·회계·경영(TAM)쟁점뉴스 요약

## 국세청,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30일까지 신고·납부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 대상자는 오는 30일까지 신고·납부를 마쳐야 한다.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는 기업 사주가 자녀회사에 직접 일감을 주거나 사업기회 등 특혜를 준 경우 매기는 세금이다.

일감몰아주기의 경우 전체 매출에서 20~50% 차지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부과하고, 떼어주기의 경우 해당 기회를 인한 이익에 부과한다. 대표적으로 상표권이나 특허권처럼 앉아서 돈 버는 영역이 해당한다.

국세청은 일감몰아주기 수증자 2029명과 1711개 수혜 법인에 안내문과 홍보물을 발송하고, 일감떼어주기 수혜 법인 115개에도 안내문과 홍보물, 신고안내책자를 발송했다.

안내문을 받지 않았더라도 신고대상이면 신고·납부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문의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 게재된 신고안내 책자, 각 세무서 상담 전담직원·국세상담센터 전화문의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분납할 수 있다. 납부 세액이 2000만원 초과 시 납부액의 50%까지 분납 가능하다.

국세청 측은 신고내용을 검토해 무신고 또는 불성실 신고자에 대한 세무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성실 신고를 당부했다.

## 정부, 연결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 1년 유예 검토

정부가 내년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연결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가 1년 유예하는 것을 검토한다.

전 세계 코로나 19 방역조치와 기업 부담 등을 고려해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정부서울청

사에서 37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겸 제3차 혁신성장전략회의를 주재하며 이렇게 밝혔다.

내부회계관리제도란 지배회사가 자사와 연결된 국내외 모든 계열사 회계·재무에 대한 내부통제 시스템과 체계를 갖추는 것을 말한다.

내년부터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에 첫 적용되며, 2023년에는 자산 5000억 이상, 2024년에는 모든 상장사 전체를 대상으로 시행할 계획이었다.

세계에서는 각국의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해외자회사에 원활하게 직원들을 파견하기가 어렵고,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에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들어간다는 시행 유예를 요청해왔다.

## '핵심기술' 투자활성화한다... 디지털 인프라 9% 저율과세 검토

정부가 핵심 디지털 기술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관련 분야 세제감면안을 추진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혁신성장전략회의를 주재하며 "빅데이터 센터 등 디지털 인프라를 뉴딜 인프라 펀드 세제혜택 대상에 신규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투자금 2억원 한도로 배당소득에 9% 저율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뉴딜 인프라 펀드 세제혜택을 디지털 인프라에 확대 적용하는 방안이 나왔다.

반도체 등 핵심 전략기술 연구개발(R&D)·시설 투자에 세금감면·금융지원 등을 추진하고, 유턴기업 대상 법인세 감면조건 완화 방안도 논의하기로 했다.

오는 6월 24일부터 7월 11일까지 열리는 대한민국 동행세일과 관련해서는 비대면·온라인 중심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대중소 유통업체·중소기업·소상공인 2870여개가 참여하는 상생·참여형 행사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1분기에 이어 2분기에도 정부부문이 성장에 긍정 기여하도록 2분기 정부 소비투자분을 차질없이 집행하겠다"라고 말했다.

# 일감몰아주기 · 일감떼어주기 증여세 6월 30일까지 신고 · 납부하세요

- 국세청, 2021. 6

## 1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개요

###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3)

- 본인·자녀 등이 지배주주\*로 있는 법인에게 특수관계법인이 일감을 몰아주어 그 본인·자녀·친족 등이 얻게 된 간접적인 이익을 증여로 의제하여 과세하는 것입니다.  
\* 수혜법인의 최대주주 등(보유주식 등의 합이 가장 많은 주주 등 1인과 그 특수관계인 모두) 중 주식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개인

#### | 일감몰아주기 과세요건 |

- ①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이 있을 것
- ②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 비율이 30%(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1,0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20%·중견기업 40%·중소기업 50%)를 초과할 것
- ③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및 그 친족의 직·간접 보유지분율이 3%(중소·중견기업은 10%)를 초과할 것

### 일감떼어주기 증여세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4)

- 본인·자녀 등이 지배주주로 있는 법인에게 특수관계법인이 사업기회를 제공하여 본인·자녀·친족 등이 얻게 된 간접적인 이익을 증여로 의제하여 과세하는 것입니다.  
\*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3개년 이익을 신고하고, 2년 후



실제 이익에 맞게 증여의제이익을 정산하여 신고함

| 일감떼어주기 과세요건 |

- ① 수혜법인이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사업기회를 제공받고 해당 부분의 영업이익이 있을 것
- ②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주식보유비율의 합계가 30% 이상일 것
  - \* 특수관계법인이 중소기업이거나 수혜법인의 주식을 50% 이상 보유한 경우 제외

**2 수혜법인이 12월 결산법인이면 6월 30일까지 신고·납부 !**

- (신고·납부기한)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대상자인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및 그 친족은 6. 30.(수)\*까지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 (신고기한) 수혜법인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 신고는 신고서를 작성하여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가까운 세무서에 직접 방문·제출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 \*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세무서 방문대신 우편신고를 권장합니다.
    - 기한 내 신고 시 신고세액공제(산출세액의 3%)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신고대상자 안내) 국세청은 빅데이터 분석 등을 활용하여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과세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증자와 수혜법인에 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 올해는 일감몰아주기 수증자 2,029명에게 안내문과 홍보물을 모바일 발송하여 신고대상자임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 1,711개 수혜법인에게는 안내문, 홍보물과 신고안내책자를 우편발송하여 지배주주 등의 정확한 신고를 돕도록 하였습니다.
  - 일감떼어주기 증여세의 경우 2020 사업연도 중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115개 수혜법인에 안내문과 홍보물, 신고안내책자를 발송하였습니다.
  - 다만, 안내문을 받지 못하였더라도 신고대상자가 자진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향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신고대상자는 기한 내 신고·납부를 부탁드립니다.

### 3 성실납세를 위해 다양한 납세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성실신고 도움제공) 국세청에서는 납세자가 신고에 어려움이 없도록 각 세무서에 신고대상자별 신고안내 및 상담 전담직원을 지정하여 신고편의를 도모하고 있으며,
  - 과세요건 해당여부 판단기준 및 증여이익 계산방법 등을 담은 신고안내 책자를 국세청 누리집에 게재하여 납세자에게 필요한 도움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 국세청 누리집 > 국세신고안내 > 개인신고안내 > 증여세 > 참고자료실 > 「2021년 일감몰아주기 · 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안내」
  - 또한, 신고서 서식과 함께 작성요령 및 사례도 국세청 누리집에 게시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편리한 납부 서비스) 납세자는 세무서 방문 없이 인터넷 · 스마트폰을 이용하거나 납부서를 출력하여 가까운 은행에서 직접 납부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및 인터넷지로에서 간편결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계좌이체, 신용카드로 편리하게 납부가 가능합니다.
    - \* 앱카드(국민·농협·롯데·삼성·신한·현대), 페이코, 삼성·카카오·네이버페이
  -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분납\*할 수 있습니다.
    - \* 2천만 원까지는 1천만 원 초과분, 2천만 원 초과 시 50%까지 분납 가능
  - 기타 일감몰아주기 · 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 · 납부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국세상담센터(☎12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4 불성실 신고검증은 한층 더 강화됩니다

- (신고검증) 국세청은 '국민이 편안한, 보다 나은 국세행정'구현을 위해 납세자의 성실신고는 최대한 지원하되, 불성실 신고자는 신고검증을 통해 엄정하게 과세할 예정입니다.
  - 특히, 일감몰아주기와 일감떼어주기를 악용한 편법적 부(富)의 이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검증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임을 유념하시어 납세자 스스로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참고 1

##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개요

### ● 과세요건 (①, ②, ③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①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이 있을 것
- ②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 비율이 30%<sup>1)</sup>(중소기업 50%·중견기업<sup>2)</sup> 40%)를 초과할 것
  - 1) 일반기업의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이 20%를 초과하고,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1,000억 원을 초과한 경우 포함('19년 신고분부터 적용)
  - 2) 직전3개년 평균매출액 5천억원 미만 등 「조세특례제한법」상 요건을 갖춘 기업
- ③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및 그 친족의 직·간접 보유지분율이 3%(중소·중견기업은 10%)를 초과할 것

### ● 수증자

-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인 주주
  - \* 수혜법인의 최대주주 등 중에서 주식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개인

### ● 증여자

-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서 일감을 준 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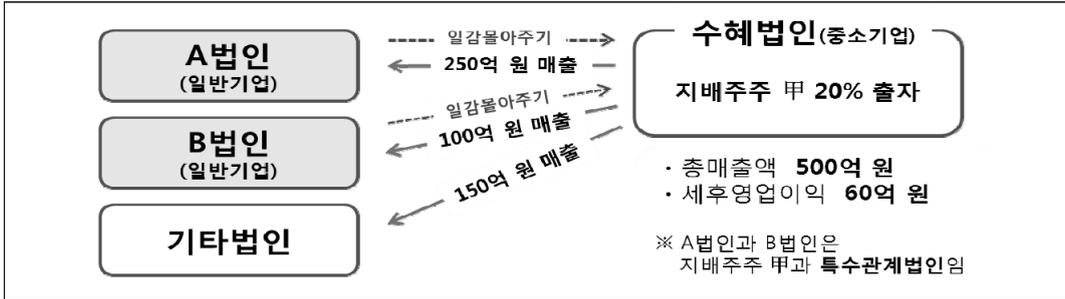
### ● 증여의제이익의 계산

- ① 수혜법인이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경우  
 $\text{세후영업이익} \times (\text{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 - 5\%) \times (\text{주식보유비율} - 0\%)$
- ② 수혜법인이 중견기업인 경우  
 $\text{세후영업이익} \times (\text{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 - 20\%) \times (\text{주식보유비율} - 5\%)$
- ③ 수혜법인이 중소기업인 경우  
 $\text{세후영업이익} \times (\text{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 - 50\%) \times (\text{주식보유비율} - 10\%)$

### ● 증여시기 : 수혜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 ● 신고·납부기한 : 수혜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

### ● 증여의제이익 계산 사례



- 지배주주 甲의 증여의제이익 계산
  - 세후영업이익 : 60억 원
  - 일감몰아주기 거래비율 : 70%(350억 원/500억 원)
  - 주식보유비율 : 20%
  - 증여의제이익 : 60억 원 × (70% - 50%) × (20% - 10%) = 1.2억 원

● 용어설명

- 수혜법인 : 법인 매출액 중 그 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들에 대한 매출액 비율이 30%(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1,0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20%·중소기업 50%·중견기업 40%)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내국법인
- 지배주주 : 수혜법인의 최대주주 그룹 중 아래의 사람을 말함
  - ㉠ 주식 직접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자가 개인 → 그 개인주주
  - ㉡ 주식 직접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자가 법인 → 직간접보유비율 가장 높은 개인
- 친족 : 배우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등
- 특수관계법인 :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을 말하며, 그 법인이 증여자가 됨

**참고 2**      **일감떼어주기 증여세 개요**

- 과세요건 ①, ②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
  - ① 수혜법인이 지배주주와 특수관계 있는 법인으로부터 사업기회를 제공받고 해당 부분의 영업이익이 있을 것
  - ②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주식보유비율의 합계가 30% 이상일 것



● 수증자

-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인 주주

\* 수혜법인의 최대주주 등 중에서 주식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개인

● 증여자

-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서 사업기회를 제공한 법인

● 증여의제이익 계산 및 정산세액 계산

① 개시사업연도

$[(\text{제공받은 사업기회로 인하여 발생한 개시사업연도의 수혜법인의 이익} \times \text{지배주주 등의 보유비율}) - \text{개시사업연도 분의 법인세 납부 세액 중 상당액}] \div \text{개시사업연도의 월 수} \times 12] \times 3$

② 정산사업연도

$[(\text{제공받은 사업기회로 인하여 개시사업연도부터 정산사업연도까지 발생한 수혜법인의 이익의 합계액}) \times \text{지배주주 등의 주식보유비율}] - \text{개시사업연도분부터 정산사업연도분까지의 법인세 납부세액 중 상당액}$

③ 정산세액 계산

②에 따른 증여세액과 ①에 따른 증여세액과의 차액을 신고 납부·환급

● 증여시기 :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 신고·납부기한 : 수혜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

**참고 3**

**문답자료(일감몰아주기 증여세)**

① 이번 신고 시 지난해 신고와 달라지는 주요 사항은?

- 올해 신고 분부터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 시 제출할 첨부서류가 추가되었습니다.

| 제출할 첨부서류 |

1. 수증자 등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 1부
2. 과세제외 매출 등 그 밖의 입증서류
3. 지배주주와 특수관계법인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추가)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부표 1 및 같은 서식 부표 2에 따른 과목별 소득금액조정명세서 1부

② 신고대상자인 수혜법인의 지배주주는 누구이고, 지배주주의 친족의 범위는?

- 수혜법인의 지배주주는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등\* 중에서 주식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개인을 말하며,  
\* 주주 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 등 1인과 그 특수관계인 모두(「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 19②)
- 지배주주의 친족의 범위는 지배주주의 배우자, 6촌 이내 혈족 및 4촌 이내 인척 등\*을 의미합니다.  
\* 「국세기본법 시행령」 § 1의2①

③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 수혜법인의 각 사업연도 매출액에서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들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로서 과세제외매출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 45의3④,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하 “상증령” 이라 함) § 34의3⑧)

$$\text{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 = \frac{\text{특수관계법인매출액} - \text{과세제외매출액}}{\text{총매출액} - \text{과세제외매출액}}$$

④ 어떤 매출액이 과세제외매출액에 해당되는지?

-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을 계산할 때 수혜법인의 각사업연도 총매출액과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에서 각각 제외하여 계산하는 금액으로 아래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 둘 이상 해당하는 경우 더 큰 금액으로 합니다.(상증령 § 34의3⑧)



과세제외매출액

- ① 중소기업인 수혜법인이 중소기업인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 ② 수혜법인이 본인의 주식보유비율이 50% 이상인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 ③ 수혜법인이 본인의 주식보유비율이 50% 미만인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에 그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수혜법인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
- ④ 수혜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인 경우로서 수혜법인의 자회사 등과 거래한 매출액
- ⑤ 수혜법인이 제품·상품의 수출을 목적으로 특수관계법인(수혜법인이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경우 국외 소재 특수관계법인만 해당)과 거래한 매출액
- ⑥ 수혜법인이 다른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 ⑦ 프로스포츠구단 운영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수혜법인이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광고 매출액
- ⑧ 국가사업에 참여함에 따라 '국가 등이나 공공기금이 50% 이상 출자한 법인'에 출자한 경우 해당 법인과와의 거래

⑤ 증여의제이익 계산 시 주식보유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 수혜법인에 대한 직·간접보유비율을 합하여 계산하되, 간접보유비율이 1천분의 1 미만인 경우 해당 출자관계는 제외합니다.



⑥ 추가 과세제외매출액에는 어떤 매출액이 해당되는지?

-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할 때 지배주주 등의 출자관계별로 아래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과세제외매출액에 포함하여 계산하며,
  - 둘 이상 해당하는 경우 더 큰 금액으로 합니다.(상증령 §34의3⑫)

Ⅰ 추가 과세제외매출액 Ⅰ

- ① 수혜법인이 법에 규정한 간접출자법인인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 ② 지주회사의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에 해당하는 수혜법인이 그 지주회사의 다른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에 해당하는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에 그 지주회사의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 다만, 지배주주 등이 수혜법인 및 특수관계법인과 지주회사를 통하여 각각 간접출자관계에 있는 경우로 한정
- ③ 수혜법인이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에 지배주주등의 그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
- ④ 수혜법인의 모회사가 간접출자법인에 해당할 경우, 모회사의 또다른 자회사와의 거래가 특수관계법인 거래에 해당되면 모회사가 특수관계법인 자회사에 대한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

⑦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어떤 규정이 적용되는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3조에 따라 둘 이상의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이익이 가장 많게 계산되는 것 하나만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참고 4

문답자료(일감떼어주기 증여세)

① 사업기회를 제공받는다든 것은 무엇인지?

- 특수관계법인이 직접 수행하거나 다른 사업자가 수행하던 사업기회를 임대차 계약, 입점 계약, 대리점 계약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한 약정을 통해 제공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Ⅰ 특수관계법인이 직접 수행하는 사업기회란? 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3 제2항에서 "특수관계법인이 직접 수행하는 사업기회"란 특수관계법인이 직접 수행하는 사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에 대한 기회를 말하는 것이고, 밀접한 관련이 있는지 여부는 특수관계법인과 수혜법인의 업종, 특수관계법인이 수혜법인을 지원한 내용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기획재정부 재산세 제과-882, '19.12.27.)

② 출자지분을 보유기준은 언제인지? 출자지분을 중간에 취득한 경우에도 해야 하는지?

- 출자지분율은 개시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출자지분의 취득시기와 관계없



이 개시사업연도 종료일에 보유한 지분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③ 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대상이 되는 지분보유비율은?

-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수혜법인 주식보유비율 합계가 30%이상인 경우에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신고의무자이며,
- 수증인 별로 수혜법인의株式이 단 1주라도 있다면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단, 증여세 과세표준이 50만 원 미만으로 과세최저한인 경우는 제외)

④ 일감떼어주기 증여의제이익은 어떻게 신고하는지?

- 개시사업연도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주식보유비율을 감안하여 3개 사업연도의 증여이익을 신고하고, 2년 후 실제 이익에 맞게 증여이익을 정산하여 신고합니다.

| 증여의제이익 계산방법(신고 시) |

- $[(\text{제공받은 사업기회로 인하여 발생한 개시사업연도의 수혜법인의 이익} \times \text{지배주주 등의 주식보유비율}) - \text{개시 사업연도분의 법인세 납부세액 중 상당액}] \div \text{개시 사업연도의 월수} \times 12 \times 3$

| 증여의제이익 계산방법(정산 시) |

- $[(\text{제공받은 사업기회로 인하여 개시사업연도부터 정산사업연도까지 발생한 수혜법인의 이익 합계액}) \times \text{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 - \text{개시 사업연도분부터 정산사업연도분까지의 법인세 납부세액 상당액}$

⑤ 올해 일감떼어주기 정산신고는 누가 하는지?

- '19년도에 일감떼어주기를 신고한 자가 정산신고 대상자가 되며, 사업기회제공일 이후 2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의 실제 이익에 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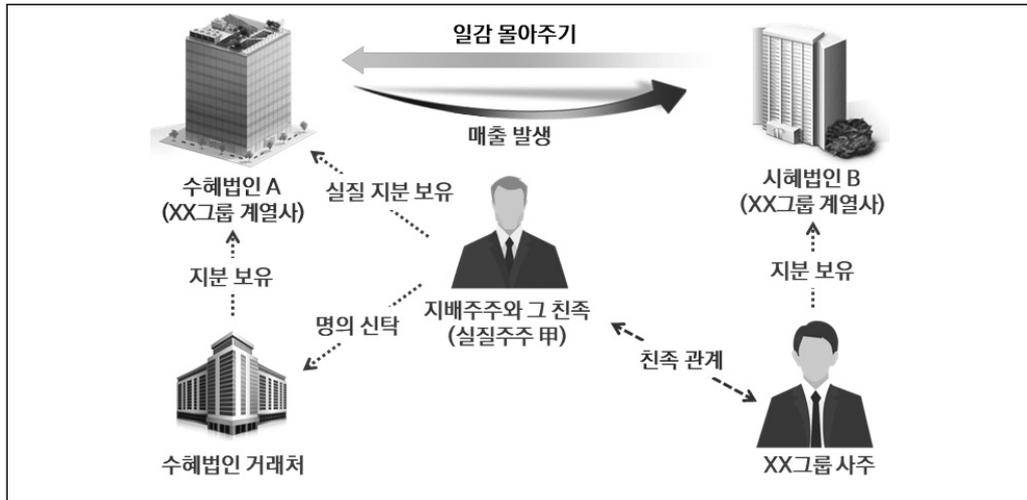
**참고 5**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주요 탈루 사례**

**사례 1**      차명주식을 이용하여 최대주주 보유지분을 은폐하는 방식으로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회피 혐의

● 인적사항

- 상 호 :        (주) ○ ○ ○ ○            ○ 성 명 : ○ ○ ○
- 소재지 :       ○ ○ 시

● 주요 적출 사항



- 수혜법인A의 지배주주 등(실질주주 甲)은 자신들의 지분을 3개 거래처에 나누어 명의신탁하여 지배주주 요건에 미달하게 하고,
- 이를 통해 수혜법인A와 특수관계법인인 시혜법인B를 특수관계 없는 법인으로 가장하여 과세회피한 사실을 확인하고 무신고한 증여의제이익에 대해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

● 조치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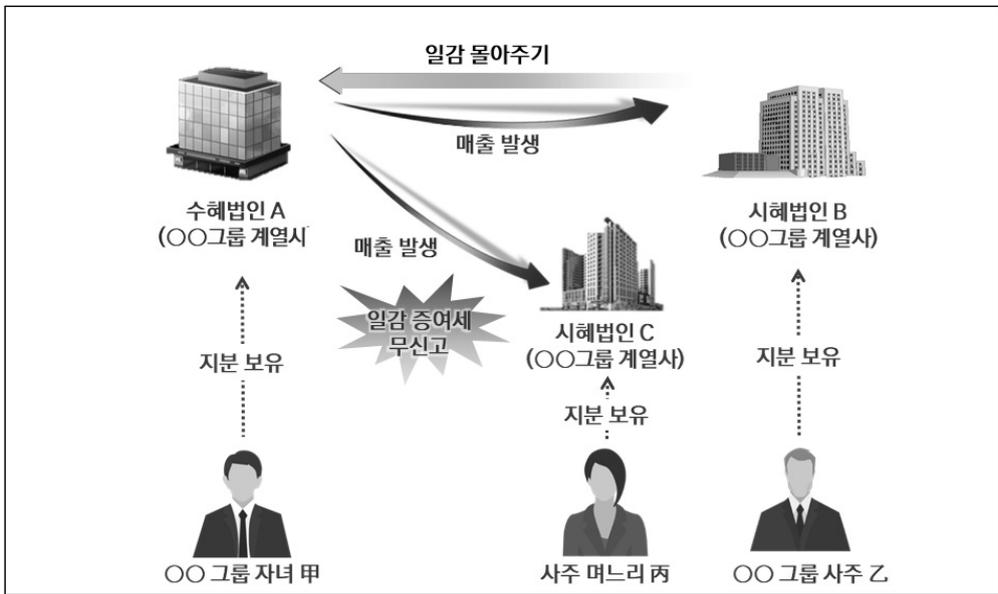
-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 ○ 억 원 추징

사례 2	일부 특수관계법인 매출을 신고하지 않는 방식으로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를 과소 신고한 혐의
------	--

● 인적사항

- 상 호:       (주) ○ ○ ○ ○                      ○ 성 명: ○ ○ ○
- 소재지:     ○ ○ 시

● 주요 적출 사항



- 수해법인A의 지배주주 甲(OO그룹 사주乙의 장남)은 시해법인B에 대한 매출액은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를 신고하였으나 乙의 며느리丙이 지분 보유한 시해법인C에 대한 매출액은 무신고 함
- 외부회계감사법인인 수해법인A의 공시자료 등을 통해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 과소신고한 사실을 확인하여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

● 조치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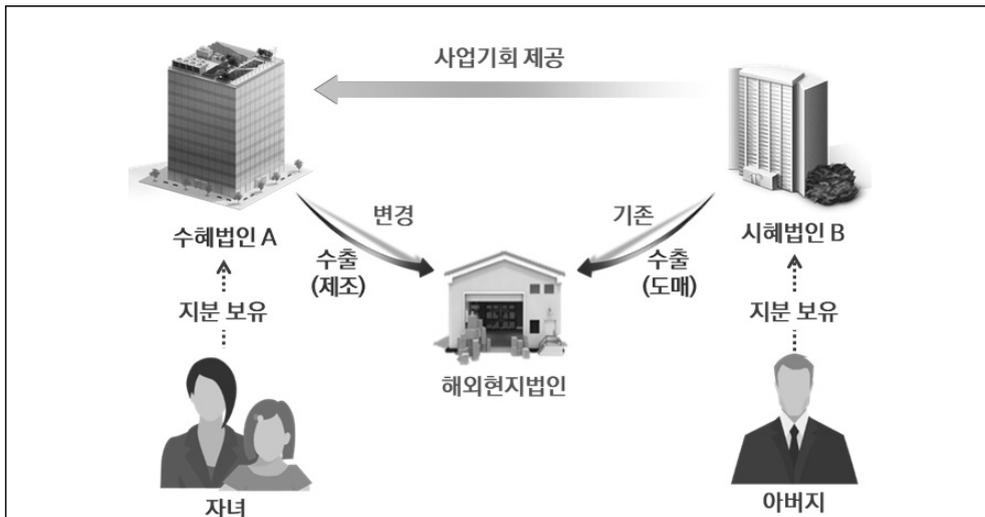
-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 ○ 억 원 추징

**사례 3**    자녀 소유 법인에 제품수출 관련 사업기회를 제공한 혐의

● 인적사항

- 상 호:        (주) ○ ○ ○ ○                      ○ 성 명: ○ ○ ○
- 소재지:       ○ ○ 시

● 주요 적출 사항



- 비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부품을 구매하여 해외현지법인에 상품을 직접 수출하고 있던 시혜법인B는 수출물량이 증가함에 따라,
  - 자녀가 지배주주로 있는 수혜법인A에 부품제조공장을 신설하게 하여 추가물량은 A법인이 해외현지법인에 생산·수출하는 방식으로 사업기회를 제공한 사실을 확인하여 일감떼어주기 증여세 과세

● 조치사항

- 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억 원 추징

# 5억 원 넘는 해외금융계좌, 6월 30일까지 신고하세요

- 국세청, 2021. 6

- (신고대상)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20년 중에 보유하고 있는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계액이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 원을 초과하였다면 관련 계좌정보를 6월 30일까지 신고하여야 합니다.
  - 신고대상 해외금융계좌는 해외금융회사와 금융거래 및 이와 유사한 거래를 위하여 개설한 계좌를 말하며, 해외금융회사에는 내국법인의 국외지점은 포함되나,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은 제외됩니다.
  - '20년 12월 세법 개정으로 거주자 및 내국법인은 가상자산거래를 위하여 해외가상자산사업자 등에 개설한 해외계좌가 있는 경우 동 계좌정보를 '23년 6월부터 신고하여야 합니다.
- (신고방법) 올해부터 홈택스뿐만 아니라 모바일로도 신고가 가능하며, 홈택스 신고시 환율 조치가 쉽도록 환율조회 사이트를 연계하였습니다.
  - 신고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국세청 누리집에 게시된 안내책자나 국세상담센터(☎ 126 → 2 → 6)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사후검증)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매년 신고가 종료되면 국가 간 금융정보 교환자료, 타기관 수집자료 등 각종 정보자료를 바탕으로 적정신고 여부를 정밀 검증하고 있습니다.
  - 미(과소)신고자에게는 과태료(미·과소신고 금액의 10%~20%)가 부과되며, 미(과소)신고 금액이 연 5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형사처벌 및 명단공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11년~'20년 제재현황: 과태료 432명 1,475억 원 부과, 형사고발 63명, 명단공개 7명

## I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시행 경과

-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는 2010년 제도 도입 이래 역외탈세 근절에 대한 사회적 요구 등 세정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많은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 그 결과 2011년에 525명이 11.5조 원을 신고하였는데 2020년에는 2,685명이 총 59.9조 원을 신고하여 제도 시행 10년만에 신고인원은 411%(2,160명), 신고금액은 421%(48.4조 원)가 증가하였습니다.
- \* 2019년부터 신고 기준금액이 10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인하되어 신고인원 증가

## II 2021년 해외금융계좌 신고 안내

- (신고요건) 거주자 및 내국법인은 '20년 중에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계액이 매 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 원을 넘는 경우 대상 계좌\* 정보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 \* '20년에 보유한 계좌로 거래가 없는 계좌, 연도 중 해지된 계좌 등 모두 포함
-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며, 내국법인은 본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는 법인을 말합니다.
- \*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
- (신고대상) 해외금융회사에 개설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모든 금융자산을 신고해야 하며, 예·적금뿐만 아니라,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보험상품 등을 모두 포함합니다.
- \* 해외금융계좌에 국내법인의 주식예탁증서(DR)로 보유하고 있다면 신고대상에 포함됩니다.
- 해외금융회사란 국외에 소재하는 금융회사\*로서, 우리나라 은행·증권회사 등이 설립한 해외 지점은 포함되지만, 외국계 은행 등이 우리나라에 설립한 국내 지점은 제외됩니다.
- \* 금융업, 보험·연금업, 금융·보험 관련 서비스업 및 이와 유사한 업종을 영위하는 회사
- (잔액 산출방법) 해외금융계좌의 매월 말일 잔액은 계좌에 보유한 각 자산을 평가하고, 그 평가금액을 해당 표시통화의 환율\*로 환산한 후 자산별 금액을 합계하여 산출합니다.
- \*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일별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
- 만일 피상속인 명의의 해외금융계좌를 수인이 공동으로 상속받은 경우에는 계좌잔액 중 공동상속인 각자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만큼만 환산하여 합산합니다.



## 〈 해외금융계좌 자산별 계좌잔액 산출방법 〉

자산	산출방법
현금	해당하는 매월 말일 종료시각 현재의 잔액
상장 주식과 그 주식을 기초로 발행한 예탁증서 상장채권	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종료시각 현재의 수량 × 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최종가격(해당하는 매월 말일이 거래일이 아닌 경우 그 직전 거래일의 최종가격)
집합투자증권	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종료시각 현재의 수량 × 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기준가격(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기준가격이 없는 경우 해당하는 매월 말일 현재의 환매가격 또는 해당하는 매월 말일 전 가장 가까운 날의 기준가격)
보험 상품	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종료시각 현재의 납입금액
위 이외의 자산	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종료시각 현재의 수량 × 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시가(시가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취득가격)

- (가상자산 계좌) '20년 12월 세법개정으로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 및 그와 유사한 자산의 거래를 위하여 해외가상자산사업자 등에 개설한 계좌\*는 '22. 1. 1. 이후 신고의무가 발생하는 분부터 신고대상('23년 6월 최초 신고)에 포함됩니다.
  -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가상자산 및 이와 유사한 자산의 거래를 위하여 국외에 있는 같은 조 제1호하목의 가상자산사업자 및 이와 유사한 사업자에 개설한 계좌
- (신고방법) 신고의무자는 오는 6월 30일까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쉽고 편리하게 전자신고\*할 수 있습니다.
  - \* (경로) 홈택스 → 신고납부 → 일반신고 → 해외금융계좌 신고
  - 또한, 올해부터 모바일\*로도 신고가 가능하니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가급적 비대면 신고수단인 국세청 홈택스와 모바일 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 (경로) 손택스 → 신고납부 → 일반신고 → 해외금융계좌 신고

## III

## 2021년 해외금융계좌 신고 시 참고할 사항

## 1 매월 말일의 보유계좌 잔액의 최고금액 계산 방법

- 보유중인 모든 해외금융계좌의 매월 말일 잔액을 원화로 환산하여 합산하였을 때 그 합계액이 가장 큰 날을 기준으로 하여, 그 기준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모든 해외금융계좌의 잔액

합계액을 신고금액으로 신고합니다.

〈 신고의무 발생(5억 원 초과) 여부 판단 사례 〉

(단위 : 억 원)

월 계좌	1/31	2/29	3/31	4/30	5/31	6/30	7/31	8/31	9/30	10/31	11/30	12/31
A계좌 잔액 (예금)	1	3	1	2	2	-	-	2	4	2	1	1
B계좌 잔액 (상장주식)	2	1	1	1	1	-	-	-	-	1	2	1
C계좌 잔액 (보험)	계좌 미개설				1	2	2	4	-	1	-	1
D계좌 잔액 (채권)	1	4	1	1	3	1	계좌 해지					
합계	4	8	3	4	7	3	2	6	4	4	3	3

☞ 사례의 경우 2020년 매월 말일 중 계좌잔액 합계액이 5억 원을 초과한 달이 2월(8억), 5월(7억), 8월(6억)이지만 합계잔액이 가장 큰 달이 2월이므로, 2월(기준월) 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A·B·D 계좌의 잔액(8억)과 계좌정보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5월에 개설한 C계좌는 신고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2 본인 명의에 의하지 아니한 계좌와 공동계좌 신고 방법

- 해외금융계좌 중 본인 명의에 의하지 아니한 계좌(차명계좌) 등 그 계좌의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가 다른 경우 거주자인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 모두 신고의무가 있고, 공동명의계좌인 경우에는 공동명의자 각각에게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 참고로,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 또는 각 공동명의자는 계좌잔액 전부를 각자 보유한 것으로 보고 신고기준금액(5억 원)이 넘는지를 계산하여 신고대상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 \* 다만, 차명계좌 및 공동명의 계좌의 관련자 중 한명이 「해외금융계좌 신고서 관련자 명세서」에 타인의 모든 해외금융계좌 정보를 제출한 경우 그 타인은 신고의무 면제
  - 실질적 소유자는 해당 계좌의 명의와는 관계없이 해당 해외금융계좌와 관련한 거래에서 경제적 위험을 부담하거나 이자·배당 등의 수익을 획득하거나 해당 계좌를 처분할 권한을 가지는 등 해당 계좌를 사실상 관리하는 자를 말합니다.

## 3 보유지분이 100%인 해외현지법인의 계좌 신고

- 내국인이 지분을 직·간접으로 100% 보유하고 있는 해외현지법인 명의 계좌의 실질적 소



유자가 내국인인 경우 해외현지법인이 조세조약 체결국에 소재하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그 해외현지법인의 계좌도 신고해야 합니다.

- 만일 해외현지법인 명의로 개설한 계좌를 해외현지법인이 실제 관리하고 있다면, 그 해외 현지법인이 조세조약 미체결국가\*에 소재하고 있는 경우에만 신고대상 계좌에 포함됩니다.

\* 조세조약 체결여부는 국세청 법령정보시스템(<https://txsi.hometax.go.kr>) 「법령 - 조세조약」에서 확인 가능

#### 4 해외 체류자 신고

-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이나 내국법인이 100% 직·간접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직원은 해외 체류 중이더라도 세법 상 거주자에 해당하므로 신고의무가 있으며,
  - 해외 유학생, 해외 근로자 등 그 밖의 해외 체류자의 경우, 국내 가족이나 자산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한다면,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 5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신고한 내용이 잘못된 경우

- 신고기한 내에 해외금융계좌정보를 미(과소)신고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기 전까지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으며, 신고한 내용에 잘못이 있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기 전까지 수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자진해서 기한 후 신고,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신고 시점에 따라 미(과소) 신고금액의 최대 90%까지 과태료가 감경되며, 명단공개\* 대상자에서도 제외됩니다.
  - \*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자

〈 기한 후 신고, 수정 신고 시 감경률 〉

기한 후 신고 시점	수정신고 시점	과태료 감경률
신고기한 후 1개월 이내	신고기한 후 6개월 이내	90%
신고기한 후 6개월 이내	신고기한 후 1년 이내	70%
신고기한 후 1년 이내	신고기한 후 2년 이내	50%
신고기한 후 2년 이내	신고기한 후 4년 이내	30%

#### 6 신고의무 면제자

-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신고의무가 면제됩니다.

구분	신고의무 면제자 요건
외국인 거주자	신고대상연도 종료일 10년(2011. 1. 1. ~ 2020. 12. 31.)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경우
재외국민*	신고대상연도 종료일 1년(2020. 1. 1. ~ 2020. 12. 31.) 전부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183일 이하인 경우
금융회사등, 기타 면제기관	금융회사 등 및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의 관리·감독이 가능한 기관
해외금융계좌 관련자	해외금융계좌 관련자 중 어느 하나의 신고를 통해 본인의 모든 해외금융계좌 정보가 제출된 자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 재외국민이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 2)

## 7 해외금융계좌 관련 국외소득 신고

- 해외금융계좌로부터 발생하는 국외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 등에 대하여는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법인세 등 관련 세금을 성실히 신고해야 합니다.
  - 과거에 신고하지 못한 국외소득에 대하여 기한 후 신고나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48조에 따른 가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적극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IV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에 대한 대응

### 1 과태료 부과, 범칙처분 및 명단공개

- (미·과소신고 과태료)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한 경우 그 미(과소) 신고금액의 10% ~ 20%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미(과소)신고금액	과 태 료
20억 원 이하	해당금액 × 10%
20억 원~50억 원	2억 원 + 20억 원 초과금액 × 15%
50억 원 초과	6.5억 원 + 50억 원 초과금액 × 20%

- \* '21.2.17. 이후 과태료를 부과하는 분부터 과태료 20억 원 상한 적용
- (미소명 과태료) 신고의무 위반자(개인·법인 모두)는 위반금액의 자금출처에 대해 소명을 요구받을 수 있으며, 미(거짓)소명 시에는 미(거짓) 소명금액의 20%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추가 부과됩니다.
- (형사처벌과 명단공개) 미(과소) 신고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벌금상당액을 부과하는 통고처분1) 또는 형사처벌2)을 받거나, 신고의무 위반자의 인적사항 등이 공개3)될 수 있습니다.
  - \* 1) 통고처분에 의한 벌금상당액 납부 시 형사처벌 받지 아니함
  - 2)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3% 이상 20% 이하의 벌금,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도 가능
  - 3) 2020년 말까지 63명을 형사고발하고 7명을 명단공개함

## 2 미(과소)신고 혐의자에 대한 사후 검증

- 국세청은 이번 신고기간 이후, 외국 과세당국과의 정보교환자료, 다른 기관이나 자체 정보활동을 통해 수집한 자료 등을 정밀 분석하여 미(과소) 신고자 검증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 사후검증 등으로 확인된 미(과소) 신고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탈루세금 추징 뿐만 아니라 통고처분 등 범칙처분과 명단공개를 법률에 따라 엄정하게 집행할 계획입니다.

## 3 금융정보 자동교환 국가·지역 확대

- 우리나라는 '20년 말 현재 스위스, 싱가포르, 홍콩 등 총 102개 국가·지역과 금융정보 자동교환을 시행하고 있으며 매년 그 국가를 확대\*하여 미신고자 적발을 위한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습니다.
  - \* ('17) 46개국 → ('18) 79개국 → ('19) 96개국 → ('20) 102개국 → ('21 예정) 110개국
  - 이에 따라 금융정보 자동교환 자료를 활용한 신고사후검증 시 신고의무 위반자 적발 사례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 연도별 과태료 부과 현황 〉

(명, 억 원)

부과 연도	합계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인원	432	20	35	43	40	24	47	53	62	40	68
과태료 부과액	1,475	11	15	116	321	44	106	120	213	55	474

#### 4 해외금융계좌정보 제보 안내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를 적발하는 데 중요한 자료<sup>1)</sup>를 제보하는 경우 과태료 또는 벌금액에 5%~15%의 지급률을 곱한 금액(20억 원 한도)에 상당하는 포상금을 지급<sup>2)</sup>하고 있습니다.
  - 1) 해외금융기관명칭, 계좌번호, 계좌잔액, 계좌 명의자 등 해외금융계좌의 구체적인 정보를 확인하여 처벌 또는 과태료 부과에 근거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
  - 2) 피제보자의 과태료 또는 벌금액이 납부되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 기간이 지났거나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불복청구 절차가 종료되어 과태료 등 부과처분이 확정(징역형이나 벌금형의 경우 재판에 의하여 형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포상금 지급

과태료 또는 벌금 납부액	포상금 지급액*
2천만 원 이상 2억 원 이하	100분의 15
2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3천만 원 + 2억 원 초과금액 × 100분의 10
5억 원 초과	6천만 원 + 5억 원 초과금액 × 100분의 5

- \* '21. 2. 17. 이후 부과되는 과태료는 20억 원이 한도이지만 벌금은 한도가 없어 벌금 납부액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최대 20억 원까지만 지급될 수 있습니다.
- 제보자의 신원과 제보내용은 「국세기본법」 제84조의2(포상금의 지급) 제5항 및 같은 법 제81조의13(비밀유지)에 따라 철저히 보호되니 국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부탁드립니다.
  - \* (제보 방법) 국세상담센터(126번) 또는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의 탈세제보 메뉴를 이용하거나, 방문·전화·우편 접수 가능

#### V 2021년 해외금융계좌 신고 도움자료

- 홈택스 전자신고 방법, 신고서 작성요령과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안내 책자에 자세히 기재하여 국세청 누리집에 게시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접근 경로)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 국세정책/제도 → 국제조세정보 → 국제조세 주요 신고제도 → 해외금융계좌 신고
- 이 밖에 신고 문의와 상담은 관할 세무서나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국번 없이 126 → 2 → 6)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자주 묻는 해외금융계좌 신고 문의사항(문답)**

**문1**

2020년 6월에 이미 신고한 해외금융계좌가 2020년 동안 잔액 변동이 없었더라도 2021년 6월에 신고해야 하나요?

- 2020년에 신고한 계좌의 잔액 변동이 없더라도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21년에 다시 신고해야 합니다.

**문2**

계좌개설만 하고 잔액이 없는 계좌나 당좌계좌의 잔액이 (-)인 계좌도 신고해야 하는지요?

- 신고 기준일인 매월 말일 현재 잔액이 없거나, 잔액이 (-)인 해외금융계좌는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 단, 신고기준금액(5억 원)을 산정할 때 계좌 잔액이 (-)인 금융부채는 다른 계좌의 잔액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문3**

해외금융계좌 신고 시 가족의 해외금융계좌잔액의 매월 말 잔액을 합산하여 신고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것인지요?

- 해외금융계좌의 신고대상 여부는 각 인별로 보유하는 계좌의 잔액으로만 판단하므로, 원칙적으로 부부, 직계존비속 등 가족의 계좌는 합산하지 않습니다.

**문4**

아버지가 실제 관리하고 있는 2개의 해외금융계좌(A, B계좌) 중 A계좌는 아버지, B계좌는 아들 명의로 개설되어 있고, 5월 말 계좌 잔액이 A계좌 4억 원, B계좌 2억 원인 경우 어떻게 신고하여야 하는지요?

- 아버지는 A, B계좌의 실질적 소유자로서 5월 말 현재 계좌 잔액 합계액이 6억 원으로 기준 금액인 5억 원을 초과하므로 A, B계좌에 대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아들을 B계좌에 대한 관련자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 아들은 자기 명의 B계좌의 잔액이 5억 원 미만이므로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 \* 만일 B계좌의 잔액이 5억 원을 넘는다면 명의자인 아들에게 B계좌에 대한 신고의무가 있으며, 아버지를 관련자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아버지가 실질적 관리자로서 B계좌를 신고하면서 아들을 관련자로 신고하였다면 신고의무가 면제됩니다.

문5

잔액이 8억 원인 계좌를 부부 2명이 공동명의로 보유하고 있는데, 지분율이 각각 50%입니다. 각자의 지분율대로 나누면 1인당 보유 계좌잔액이 5억 원 이하가 되는데, 이런 경우에도 신고해야 하나요?

- 공동명 의자는 해당 계좌의 잔액 전부를 각각 보유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지분율에 상관없이 공동명 의자 모두가 잔액을 8억 원으로 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 다만, 공동명 의자 중 한 명이 다른 공동명 의자의 계좌정보를 함께 신고하여 다른 공동명 의자가 보유한 모든 계좌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공동명 의자는 신고의무가 면제됩니다.

문6

연도 중 개설 또는 해지된 해외금융계좌는 신고 대상인지요?

- 지난해 연도 중 개설되거나 해지된 금융계좌라 하더라도 지난해 매월 말일 중 보유계좌 잔액의 합계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날이 있고 그 합계액이 가장 큰 날에 해당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고 대상입니다.

문7

우리나라 투자자가 해외주식 거래를 목적으로 국내 증권사에 계좌를 개설한 경우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에 포함되나요?

- 우리나라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해외주식 거래를 목적으로 국내 증권사에 개설한 계좌는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문8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해 비트코인을 매수하기 위하여 2020년에 개설한 해외 금융계좌도 신고대상인가요?

- 가상자산 거래를 위하여 해외 가상자산 사업자 및 이와 유사한 사업자에 개설한 해외금융계좌는 2023년 6월부터 신고하여야 합니다.

문9

해외금융계좌의 외화금액을 어떻게 환산하여 신고하나요?

- 연도 매월 말일 중 보유하고 있는 각 해외금융계좌의 잔액을 매월 말일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기준으로 원화로 환산하여 합산했을 때 그 합계액이 가장 큰 날의 금액을 신고합니다.
  - 기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전날 고시된 환율을 적용합니다.
  - \* 기준환율 및 재정환율은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bok.or.kr) '환율'항목이나 서울외국환중개주식회사(www.smbs.biz)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문10

조세조약 체결국에 소재한 외국법인의 지분을 100% 보유한 내국법인(또는 거주자)은 그 외국법인 계좌를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요?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4조 제1항에 따라 사실상 관리하는 계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분을 및 조세조약 체결여부 등과 무관하게 신고 대상입니다.

문11

해외금융계좌와 관련된 이자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경우에도 별도로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해야 하는지요?

- 해외금융계좌와 관련된 이자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하였다라도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자에 해당된다면 관련 해외금융계좌정보를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문12

해외금융계좌(매월 말 잔액 합계 100억 원)의 누락사실이 2021년 7월에 발견되었을 경우 과태료는 연도별로 부과되는지 아니면 1회만 부과되는지요?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는 신고의무를 위반한 연도마다 부과되며, 연속하여 여러 연도에 걸쳐 신고누락 하였다면 각 연도별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문13

차명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는 누구에게 부과되나요?

- 차명계좌의 경우 명의자와 실소유자 모두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과태료도 명의자와 실소유자에게 각각 부과됩니다.
- 다만, 명의자나 실소유자 중 어느 한 명이 보유계좌정보를 신고함에 따라 다른 자가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를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경우 그 다른 자는 신고의무가 면제됩니다.

## 붙임 2

### 거주자 판정기준

-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고,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함.

(주소)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

(거소)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하는 장소

● 소득세법 상 거주자 판정기준 및 관련 법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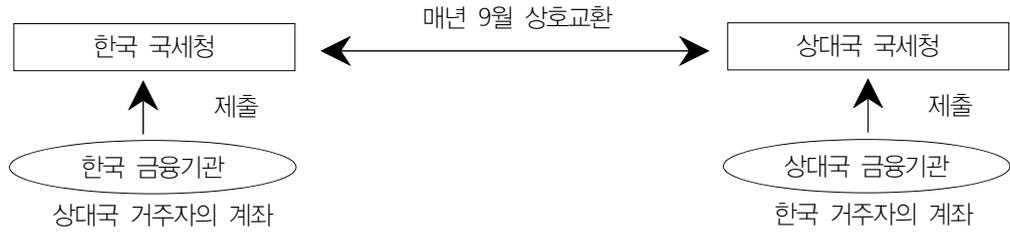
1. 주소로 판정(체류기간에 상관없이 주소를 가진 경우는 거주자)	법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경우로 보는 경우</li> <li>-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li> <li>-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li> <li>-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승무원의 경우 그 승무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거주하는 장소 또는 그 승무원이 근무기간외의 기간 중 통상 체재하는 장소가 국내에 있는 때에는 당해 승무원의 주소는 국내에 있는 것으로 봄</li> <li>-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과 해외현지법인*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이나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거주자로 봄</li> <li>* 내국법인이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100을 직접 또는 간접 출자한 경우에 한정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3항</li> <li>○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5항</li> <li>○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li> </ul>
2. 거소로 판정(체류기간 충족만으로 거주자에 해당)	법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경우</li> <li>- 거소를 둔 기간이 1과세기간 동안 183일 이상*인 경우</li> <li>* 183일 연속으로 거주할 필요는 없음</li> <li>-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 다음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이고 관광, 치료 등 출국목적이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출국기간도 국내 거주기간에 포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득세법 제1의2조 제1항</li> <li>○ 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 간주규정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주소 판정 가능(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li> <li>- 국내·외 생활관계를 비교하여 판단하는 것이 아닌 국내에서의 생활관계로만 판단</li> </ul>	

**붙임 3**

**금융정보 자동교환 제도 개요**

**개 요**

- 한·미 금융정보 자동교환 협정 또는 다자간 금융정보 자동교환 협정 참여국 간 금융계좌 정보를 매년 정기적으로 상호 교환하는 제도



※ 『정보교환 협정에 따른 금융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 제11조에 따른 금융계좌 분류  
 - 예금계좌, 수탁계좌(증권 거래계좌 등), 자본지분 및 채무지분, 보험·연금계약

### 한·미 금융정보 자동교환 (FATCA)

○ 매년 9월 상대국 거주자의 금융계좌 정보 교환

교환대상		한국 → 미국		미국 → 한국
대상 계좌	개인	기준*	(원칙) 5만 달러 초과 금융계좌 (예외) 25만 달러 이하 보험·연금 계약 계좌 제외	○ 연간이자 10달러 초과 예금계좌 ○ 미국원천소득 관련 기타 금융계좌
		신규*	(원칙) 모든 금융계좌 (예외) 5만 달러 이하 예금·보험 계약 제외	
	법인	기준	25만 달러 초과 금융계좌	○ 미국원천소득 관련 금융계좌
		신규	모든 금융계좌	
교환 정보		○ 계좌보유자 정보, 계좌번호, 계좌잔액, 이자·배당소득 등		○ 계좌보유자 정보, 계좌번호, 이자·배 당소득, 기타 원천소득 등

\* 기존계좌: 2014. 6. 30. 이전 개설 계좌 / 신규계좌: 2014. 7. 1. 이후 개설 계좌

### 다자간 금융정보 자동교환(CRS)

○ 매년 9월 상대국 거주자의 금융계좌 정보 교환

- '17년 45개국, '18년 78개국, '19년 95개국, '20년 102개국, '21년 110개국과 교환 예정

교환대상		체약상대국 ↔ 한국	
대상 계좌	개인	○ 모든 금융계좌	
	법인	기준*	25만 달러 초과 금융계좌
		신규*	모든 금융계좌
교환 정보		○ 계좌보유자 정보, 계좌번호, 계좌잔액, 금융소득	

\* 기존계좌: 2015. 12. 31. 이전 개설 계좌 / 신규계좌: 2016. 1. 1. 이후 개설 계좌

# 공정거래법 시행령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 공정거래위원회, 2021. 6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개정 공정거래법의 시행(2021. 12. 30. 예정)을 위해 필요한 사항과 기업집단법제 관련 제도개선 사항 등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을 2021. 6. 4.부터 2021. 7. 14.까지 40일간 입법예고했다.
  - 이번 개정안은 벤처지주회사 규제를 완화하고, CVC 펀드의 외부자금 조달비율을 법상 최대한도인 40%로 설정하며, 거래금액 기반 기업결합 신고기준 및 정보교환담합 규율대상 정보를 구체화 하는 등 혁신성장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또한, 국외 계열회사에 관한 공시를 강화하고 공익법인의 이사회 의결·공시 대상을 구체화되, 소규모 비상장사(자산총액 100억 원 미만)에 대해 공시의무를 면제하고 임원 독립경영 요건을 완화하는 등 대기업집단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였다.
  - 아울러, 서면실태조사 관련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하고, 당사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진술조서 기재사항을 규정하는 등 법 집행체계·절차를 개선하였다.

〈 공정거래법 시행령 전부개정안 주요 개정사항 〉

구분	주요 개정사항	비고
혁신성장 촉진	벤처지주회사 유용성 개선	법 위임사항
	CVC 제도 시행에 관한 규정 신설	법 위임사항
	PEF전업집단의 대기업집단 지정제외 규정 신설	
	거래금액 기반 기업결합 신고기준 구체화	법 위임사항
	정보교환담합 금지규정 적용대상 정보 구체화	법 위임사항
	자진신고 감면 취소사유 구체화	법 위임사항
기업집단법제 개선	임원독립경영 출자요건 완화	
	친족독립경영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소규모 비상장회사 공시부담 완화	
	국외 계열회사 현황에 대한 공시기준 구체화	법 위임사항
	공익법인 이사회 의결·공시 대상 구체화	법 위임사항
법 집행 체계·절차개선	서면실태조사 관련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법 위임사항
	진술조서 기재사항 규정	법 위임사항



## 1 개정 배경

- 2020. 12. 29. 전부개정된 공정거래법(2021. 12. 30. 시행 예정)은 혁신성장 촉진, 기업집단법제 개편 및 법 집행체계·절차 개선 등을 위해 제도를 신설 또는 보완하면서,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 또한, 그간 대기업집단 시책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일부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다.
- 이에 개정 공정거래법의 차질없는 시행 및 대기업집단 시책의 합리성 제고를 위해 공정거래법 시행령 전부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

## 2 전부개정안 주요내용

### < 혁신성장 촉진 관련 개정사항 >

#### 1. 벤처지주회사 유용성 개선 (안 §26조 등)

-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위해 벤처지주회사제도를 운영중이나, 자산총액 기준 등에 관한 현행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여 제도의 유용성을 제약하는 측면이 있었는데,
  - 이번 개정안은 벤처지주회사로 인정받는 자산총액 기준을 현행 5천억원에서 3백억원으로 축소하고, 벤처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벤처기업 외에 ‘R&D 규모가 연간 매출액의 5% 이상인 중소기업’도 포함하도록 하였다.
    - \* 벤처지주회사는 자회사 주식가액 중 벤처자회사 주식가액의 비율이 50% 이상이어야 함
  - 또한, 벤처지주회사의 자회사인 중소벤처기업\*의 경우 기업가치를 실현시키는데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대기업집단 소속회사로의 계열편입을 유예하는 기간을 현행 7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였다.
    - \* 벤처기업 및 R&D 규모가 매출액의 5%이상 중소기업
- 다만, 벤처지주회사제도를 악용하는 사익편취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총수일가가 자·손자·증손회사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벤처지주회사가 될 수 없도록 하고,
  - 벤처지주회사가 지주·자·손자·증손회사와 특수관계인과의 내부거래에 관한 자료를 매년 공정위에 제출하도록 하였다.

## 2. CVC 제도 시행에 관한 규정 신설 (안 § 29조, 5조②항5호다목 등)

- 개정 공정거래법은 일반지주회사가 보유한 기업형벤처캐피탈(CVC)\*이 조성한 펀드에 투입되는 외부자금의 상한을 40% 이내에서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 이번 개정안은 외부자금의 상한을 법에서 허용하는 최고 수준인 40%로 설정하고, 벤처지주회사의 자회사의 경우와 동일하게 CVC가 투자한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계열편입 유예기간도 10년으로 확대하였다.

## 3. PEF전업집단의 대기업집단 지정제외 규정 신설 (안 § 36조①항5호·6호)

- 현행 시행령은 금융·보험업만 영위하는 기업집단(금융전업집단) 등을 대기업집단 지정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PEF전업집단\*은 경제력 집중 우려가 크지 않음\*\*에도 지정 대상에서 제외하지 않았는데,
  - \*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PEF: Private Equity Fund) 관련 회사와 피투자회사로만 구성된 기업집단
  - \*\* PEF는 투자대상기업의 가치를 높힌 후 되팔아(buy-out) 수익을 남기는 것이 목적이므로 기업 지배가 일시적임
- 이번 개정안은 'PEF전업집단',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와 PEF 관련 회사만으로 구성된 기업집단' 을 대기업집단 지정에서 제외되도록 규정 하였다.

## 4. 거래금액 기반 기업결합 신고기준 구체화 (안 § 21조⑧항·⑨항)

- 개정 공정거래법은 거래금액이 일정수준 이상이면서 피취득회사가 국내시장에서 상당한 수준으로 활동하는 경우의 기업결합을 신고하도록 하면서, 그 구체적인 기준을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 이번 개정안은 거래금액이 '6천억원 이상' 이면서, 국내시장에서 '월간 100만명 이상에게 상품·용역을 판매·제공' 하거나 '국내 연구개발 관련 예산이 연간 300억원 이상인 경우' 에는 기업결합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였다.

## 5. 정보교환담합 금지규정 적용대상 정보 구체화 (안 § 43조)

- 개정 공정거래법은 가격, 생산량 등의 정보를 교환하기로 합의함으로써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정보교환담합 적용대상 정보를 시행령에서 추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 이번 개정안은 정보교환담합 금지규정 적용대상 정보를 ① 상품·용역 원가, ② 출고량·재고량·판매량, ③ 상품·용역 거래조건 또는 대금·대가 지급조건으로 규정하였다.
    - \* 정보교환 합의 외에도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범위반에 해당하며, 구체적 범위반 판단기준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관련 연구용역 진행중)



## 6. 자진신고 감면 취소사유 구체화 (안 § 54조①항)

- 개정 공정거래법은 담합 사실을 자진신고하여 제재조치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은 자가 재판에서 조사과정과 달리 진술하는 등의 경우에는 그 감면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구체적인 취소사유를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 이번 개정안은 취소사유를 ① 중요 진술·제출자료를 재판 과정에서 부정하는 경우, ② 거짓자료를 제출한 경우, ③ 법정 불출석 등 정당한 이유없이 재판에 성실하게 협조하지 않는 경우, ④ 자진신고한 공동행위 사실을 부인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로 규정하였다.

### < 기업집단법제 개선 관련 개정사항 >

## 7. 임원·친족독립경영제도 합리화

- ① 임원독립경영\* 출자요건 완화 (안 § 5조①항3호다목)
  - \* 대기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임원이 별도로 지배하는 회사가 임원겸임·출자·채무보증 등의 측면에서 해당 대기기업집단과 무관한 경우 그 대기기업집단에서 제외하는 제도
- 현행 임원독립경영제도는 임원측 계열회사와 동일인측 계열회사간 출자를 금지하는 등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여\* 대기기업집단이 전문적 경험과 역량을 갖춘 기업인을 활용하는데 한계가 있었는데,
  - 이번 개정안은 특정인이 대기기업집단 소속회사의 비상임이사로 선임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선임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동일인측 계열회사 지분을 3%(비상장사는 15%) 미만까지 허용하였다.
    - \* '18.4월 제도가 도입된 이후 '20년말까지 임원독립경영 건수는 8건이나, 같은 기간 동안 친족독립경영 건수는 33건
- ② 친족독립경영(친족분리)\*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안 § 5조⑥항, 6조③항2호·3호)
  - \* 동일인의 친족(독립경영자)이 회사를 독립적으로 경영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회사를 해당 대기기업집단에서 제외하고 해당 친족을 동일인관련자에서 제외하는 제도
- 현행 시행령은 부당 내부거래 방지 등을 위해 친족측 계열회사에 대해 그 분리가 결정된 시점부터 3년간 동일인측 회사와의 거래현황 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는데,
  - 이번 개정안은 분리된 친족측이 분리가 결정된 이후 3년 이내에 새롭게 지배력을 확보한 회사에 대해서도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였다.
  - 또한, ① 독립경영결정이 취소되는 경우, 또는 ② 청산 등으로 친족측이 지배하는 회사가 없게 되는 경우로서, 분리된 친족이 동일인관련자에서 제외되어 대기기업집단 소속회사가 사익편취규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그 분리되었던 친족을 당초대로 동일인의 친족으로 복원하도록 함으로써, 사익편취 규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였다.

## 8. 공시제도 합리화 및 관련규정 신설

### ① 소규모 비상장회사 공시부담 완화 (안 §32조①항)

- 이번 개정안은 총수일가 지분율이 20%미만인면서 자산총액이 100억원 미만인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소규모 비상장사에 대해 소유지배구조 현황, 재무구조 현황 등의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의무를 면제\*하여, 기업부담을 완화해 주면서 동시에 사익편취 위험을 예방하였다.

\* 다만, 총수일가 지분율이 20% 이상인 회사가 50%를 초과하여 주식을 소유한 회사는 공시대상에 포함

### ② 국외 계열회사 현황에 대한 공시기준 구체화 (안 §33조③항~⑥항)

- 개정 공정거래법은 동일인에 대해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국내 계열회사에 직·간접 출자한 국외 계열회사 등의 현황 정보에 관한 공시의무를 부과하면서, 공시내용, 간접출자 범위, 공시의무 면제사유를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 이번 개정안은 동일인이 국외 계열회사의 일반현황(회사명, 소재국, 설립일, 사업내용), 주주현황, 계열회사 출자현황 등을 공시하도록 하고,
  - ‘국내 계열회사 주식을 직접 소유하고 있는 국외 계열회사의 주식을 하나 이상의 출자를 통해 연결하여 소유(간접출자)하고 있는 회사’ 도 공시대상에 포함시키되,
  - 동일인의 의식불명, 실종선고, 성년후견 개시, 소재국 법률에서 주주명부 제공을 금지하는 등의 경우에는 공시의무를 면제하였다.

### ③ 공익법인 이사회 의결·공시대상 구체화 (안 §31조②항, 34조)

- 개정 공정거래법은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에 대해 대규모 상품·용역 내부거래시 이사회 의결 및 공시를 의무화하면서, 대상이 되는 거래금액 기준과 거래상대방 기준을 시행령에 위임함에 따라,
  - 이번 개정안은 현행 대규모내부거래 이사회 의결·공시 대상과 유사하게, 이사회 의결·공시의 대상이 되는 거래금액은 ‘순자산총계\* 또는 기본순자산\*\* 중 큰 금액의 5% 이상이거나 50억원 이상인 거래’ 로, 거래상대방은 ‘총수일가가 20% 이상 회사(상법상 자회사 포함)’ 로 규정하였다.

\* 순자산총계 = 기본순자산 + 보통순자산 + 순자산조정

\*\* [공익법인 회계기준(기재부고시)§ 20조①항] 기본순자산은 사용·처분에 ‘영구적 제약’이 있는 순자산을 말함

## < 법 집행체계·절차 개선 관련 개정사항 >

### 9. 서면실태조사 관련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안 별표10)

- 개정 공정거래법은 거래실태 파악을 위한 서면실태조사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이를 위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자료를 제출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 이번 개정안은 서면실태조사 관련 자료 미제출 또는 거짓자료 제출시 사업자 등에 대해 최대 1억원, 임원 등에 대해 최대 1천만원을 부과 할 수 있도록 하되, 위반 횟수에 따라 그 금액을 차등화 하였다.
- \* (예) 사업자 범위반시 (1차) 2천만원, (2차) 5천만원, (3차이상) 1억원 부과  
임원 범위반시 (1차) 2백만원, (2차) 5백만원, (3차이상) 1천만원 부과

### 10. 진술조서 기재사항 규정 (안 § 75조②항)

- 개정 공정거래법은 당사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당사자의 진술을 듣는 경우 진술조서를 작성하도록 의무화하면서, 진술조서 작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 이번 개정안은 진술조서에 진술자의 성명·주소, 진술일시·장소·내용을 기재하도록 규정하였다.
- \* 현행 조사절차규칙상 진술조서 관련 내용을 반영

## 3 기대 효과 및 향후 계획

-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면 벤처지주회사 및 CVC를 통한 벤처투자를 활성화하는 등 혁신성장을 촉진하고,
- 대기업집단 시책을 규율 필요성, 기업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규제의 실효성 및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공정위는 금번 입법예고에 앞서 경제계·시민단체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시행령 개정방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 입법예고 기간 동안 추가로 경제계·시민단체 등 이해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신속하게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 제출 방법

▶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2021년 7월 1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①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수정 의견과 그 이유), ②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를 적은 의견서를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우편 : 세종시 다솜3로95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과 (우: 30108)

\* 팩스 : 044-200-4342